
2025 농아인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 자료(3차 재공고)



|| 목 차 ||

I. 2025년 농아인 생활체육교실 사업 추진 계획	3
1. 목적 및 추진방향	3
2. 농아인 생활체육교실 지원	5
3. 농아인 생활체육교실 평가	8
II. 2025년 농아인 생활체육교실 사업 진행 및 정산	10
1. 사업추진 흐름	10
2. 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	11
3. 사업진행 및 정산	13

1. 목적 및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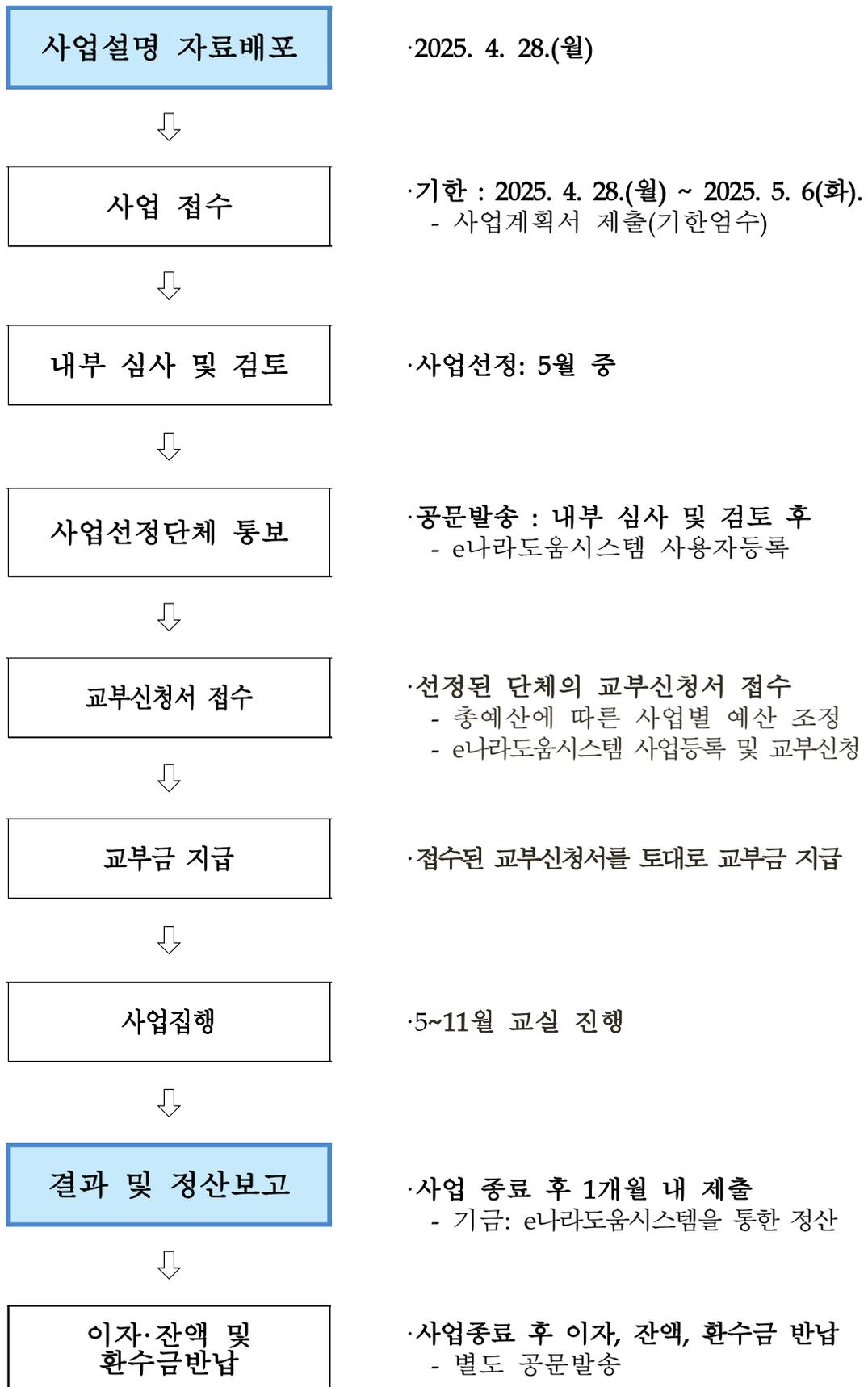
■ 목 적

- 전국 농아인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교실사업 지원
- 농아인들의 체육활동지원을 통해 미래 꿈나무 선수들의 신체발달과 사회성 함양
-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인 클럽 지원을 통하여 농아인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종목의 저변확대 및 선수 지원을 도모
-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인 클럽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의 기반을 확립하고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이어지는 내실화 추구
-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인 클럽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우수선수 발굴

■ 추진방향

- 체육을 통하여 농아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신체적, 정신적 건강 증진
- 농아인들에게 적합한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생활체육지원을 통해 농아인들의 체육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신인선수 및 우수선수 발굴의 기회 마련

■ 사업추진일정



2. 농아인 생활체육교실 지원

■ 개 요

- 사업기간: 2025년 5월 ~ 11월
- 사업형태: 교부(차등 및 공모)
- 사업대상: 본 연맹 가맹 시도지부(시·군·구 연맹 포함), 농아인 관련 단체
* 고유번호증 필수
- 운영종목: 생활체육 전 종목
- 사업내용 기준
 - 생활체육 전 종목 대상 초보자 교실 시행
 - 교실 당 주1회 이상 수업, 6개월 이상 운영
 - 지도자, 운영요원 제외 순수참가자 10명 이상
 - 시·도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단체 및 대상자 중복 불가
 - 사회통합을 위해 어울림교실 권장(가족, 친구, 보호자, 활동보조 등)
- 지원규모
 - 차등기준

개소	지원금액	지원단체
1개소	290만원	(사)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가맹 시도 지부(시·군·구 연맹 포함), 농아인 관련 단체
1개소	250만원	

※ 2024년 현장평가 및 행정능력평가 따라 차등 지급결정

※ 2025년 사업계획서 평가 후 차등 지급결정

■ 【지원예산항목】 - 농아인 생활체육교실

목	세목	항목	금 액	지원내용
인건비	일용임금	운영요원 수당	일 50,000원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일 기준 * 주관단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/가족 수당 지급 불가
인 영 비	일 반 수용비	지도자 수당	일 100,000원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어통역사 포함 * 수어통역사 자격증 필수 첨부 * 지도자자격증 필수 첨부 (심판자격증 인정불가)
		운동용품	실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사용 소모성 용품 지원 * 개인용품 불가, 자산취득 대상 불가
		홍보물	실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수막, 팜플렛, 포스터 등
	공공요금 및 제세	상해보험료	실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부담 항목으로 필수 가입 * 스포츠안전재단 참조
	임차료	시설이용료	실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소 임차비 및 입장료, 사용료 등
		운동용품	실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기구, 장비, 임차비
	기 타 운영비	의료약품	실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모성 의료약품 구입 * 구급상자 필수 * 코로나19 방역의료 소모품 구입가능 (무분별한 대량구매 지양)
업 무 추 진 비	사 업 추진비	간식, 음료 등	개소 당 20만원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간식(음료 등)에 한함 ※ 식사 불가

○ 지도자 구성

- 시·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우선 배치
-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어려울 경우 지도자격 입증 가능한 외부 강사채용
- 지도자 외 보조 강사 및 운영요원 배치 가능(복수 운영 가능)
-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외부 강사 적극 활용
(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 시간외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시행)

■ 사업신청 준수 사항

- 순수참가인원 10명 이상, 신규인원 구성
 - 지도자, 운영요원 제외 순수참가인원 10명 이상
 - 비장애인 참여 가능
 - 신규참여자 반드시 포함, 참여자 명단 제출 필수
- 실제 실행 일정과 유사한 계획서 작성, 교육환경의 적합성 정도
 - 장애인편의시설 사진첨부
- 자부담 사용 시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빙 서류 제출
 - 현수막 제작, 응급상황대비 구급상자 및 소모성 약품 구입, 상해보험가입, 단체복제작 등 활용
- 운영요원 배치: 지도자, 보조지도자 구분, 자격증명서 첨부
 - 지도자 수당 지급 대상자: 1회 기준 10만원이내 수당 지급(수어통역사 동일 적용)
 - 종목 공인자격증(문화체육관광부 발급) 소지자
 - 중앙경기단체 자격증 소지자, 체육지도자자격증(공인기준)
 - * 기타 심판자격증, 강습회 수료증소지자 보조금지도자 수당항목 지급 제외
- 운영기관 소속 직원 지도자수당 지급 불가
 - 단 사무처, 운영기관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규근무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시간(평일 18시이후, 주말 등)에는 보조금으로 지도자수당 지급 가능
- 용품구입 인정범위
 - 라켓류, 안전용품, 구기류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용품
 - 용품 목록 및 소모품 현황대장 비치 필수
-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체계 구축 필수
 - 상해보험, 구급함, 응급 대피 메뉴얼 등
-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복지카드 보안 철저
 - * 생년월일 외 주민번호 공개 불가

4. 농아인 생활체육교실 평가

■ 서류평가

○ 선정가점요인

- 양식에 맞는 사업계획서
- 권장 교실 및 동호인클럽
- 사업 참여 인원수
- 기존 사업 신규 회원 확보
- 기존 사업 참여 실적 중 가점요인(기일준수, 적극적 참여 등)

○ 선정제외 및 감점요인

- 실행 불가능한 사업계획서 제외
 - * 참여자 명단 불분명, 사업운영 장소 미선정 등(단, 참여자 모집방법 등 명시 된 경우 예외)
- 사업별 필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
- 기존 사업 참여 실적 중 감점요인(기일 미준수, 불참 등)
- 양식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 감점

■ 현장평가

○ 점검기간 : 2025. 5. ~ 11. 中

* 점검내용 토대로 평가점수 도출하여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

○ 평가내용

- 참가인원: 사업계획 대비 참가인원
- 사업실행: 사업계획 대비 수업/장소/시간 준수
- 사업홍보: 홍보물 설치, 기타 홍보수단
- 사업장소: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
- 기 타: 응급상황 대비 등

■ 평가체계

○ 평가체계 기본방향

- 정책목표 및 사업추진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항목 설정
- 신규 회원 발굴 유도 및 균형적인 청각장애생활체육지원 체계 구축
- 해당연도 사업추진방향을 평가에 적극반영
- 종합평가 일정 점수 이하 사업장은 행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차년도 사업선정 평가 시 감점 처리하여 사업 내실화에 기여
- 명확한 기준의 정량지표 평가방식으로 민원발생 최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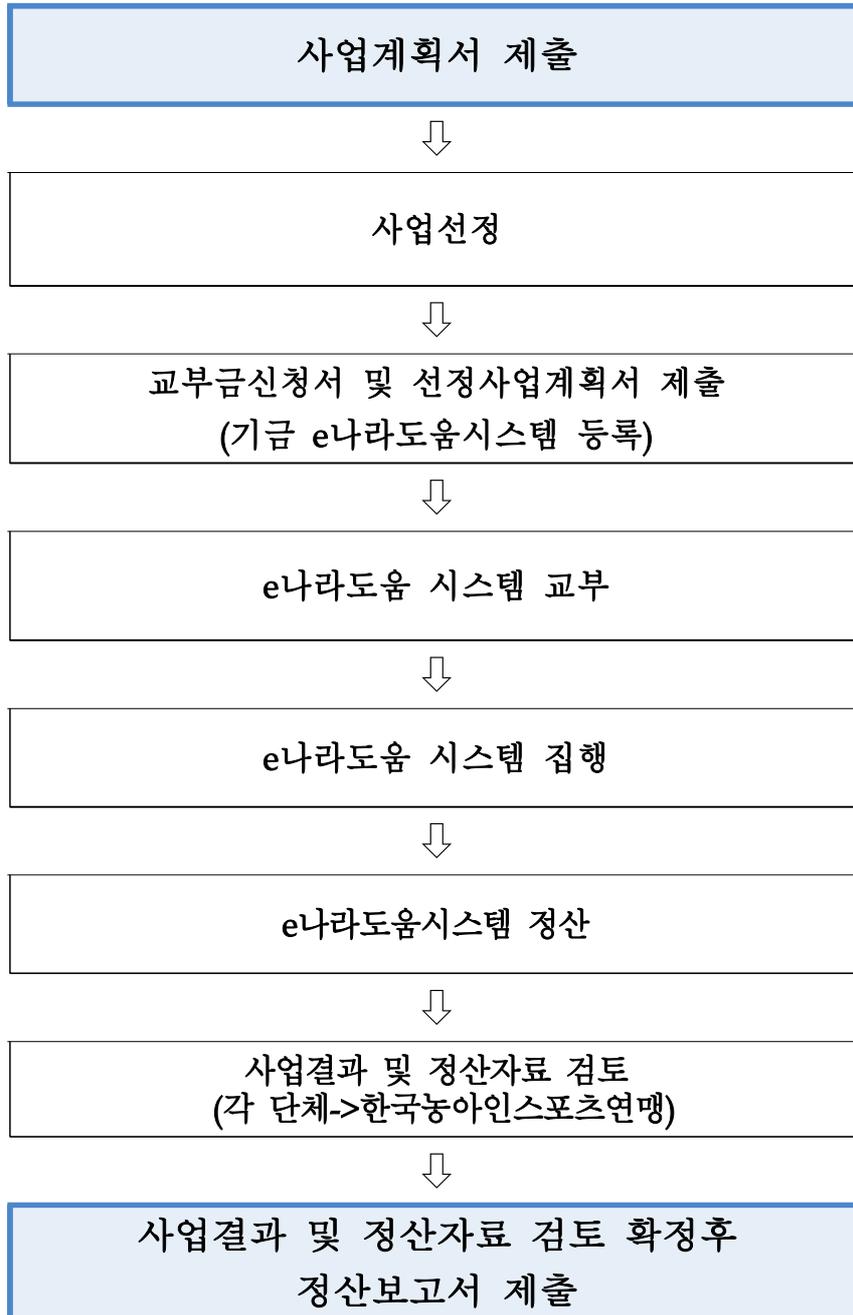
2025 농아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사업 종합평가표

평가 요 소	현장평가	사업별 현장평가결과 점수
	행정능력평가	사업계획서, 정산서, e나라도움 등 행정업무 처리 능력 종합적 평가
	참여 및 기타	사업단체 담당자 업무 협조 및 사업교육일정 참석 여부

배 점	현장평가 (40)	A (40)	B (30)	C (20)	D (10)	E (0)
	행정능력평가 (45)	매우우수 (45)	우수 (35)	보통 (25)	미흡 (15)	매우미흡 (5)
	참여 및 기타 (15)	참석 (15)		사전불참통보 (7.5)		불참 (0)

II 2025년 농아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사업 진행 및 정산

1. 사업추진 흐름



2. 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

■ 사업계획서 제출

- 제출기간: 2025. 4. 28.(월) ~ 5. 6.(화)까지 접수
- 제출방법: (사)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이메일 *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
- 제출서류
 - 공문: 사업계획서 제출공문, 직인 날인 필수, 시행일자 기준 발송
 - 사업계획서
 - 1) 신청기관 고유번호증 사본
 - 2) 운영단체는 용품관리대장(해당단체)
 - 3) 기타증빙자료(지도자 자격증 사본 등)
-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
 -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에 직접 이메일 제출 (koreadsf@gmail.com)
 - 전화: 02-392-7676(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)
- 검토사항
 - 계획서 제출기간(지정시간)을 초과할 경우 사업검토 대상에서 제외
 - 사업신청 공문은 반드시 시행번호 및 시행일자 기준 발송해야 하며, 단체 직인 날인 필수
 - 사업접수(절차) 및 제출서류에 대한 미비로 선정오류(제외)발생 시 책임 불가

■ 교부금신청서 제출

- 교부금 신청서 작성·제출
 - 재원(기금, 지방비)을 구분, 수정내용 반영하여 산출내역 및 운영 계획서 양식 준수하여 작성 제출
 -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과 동일
 - 재원별 사업통장 필수 * 교부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(잔액이 0원으로 되어있는 통장)

■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등록 및 교부금신청서제출

○ e나라도움시스템(<http://www.gosims.go.kr>)

-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국가보조금 집행·정산 시스템
- e나라도움시스템 상담센터: 1670-9595
-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시 참고사항

구분	참고사항
회원가입	가입자 본인의 개인공인인증서(본인인증용)
사업등록	사업계획서, 사업전용 법인통장 파일첨부 *1개 사업=1개 통장·잔액 0원-가상계좌 연결
교부신청	교부신청서 파일첨부
카드사용	e나라도움시스템 전용카드 사용
계좌이체	전자세금계산서(법인간 거래)
이용환경등록	법인공인인증서, 법인 OTP(이체시 필요)
집행정정보등록	증빙유형 별 필요서류 첨부

○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등록

- 교부금신청서 제출 후 기금사업만 사업등록
- 보조사업자 지정 양식 제출(자료실)
- 체육회에서 보조사업자 지정 후 사업등록(기금사업만 등록)·제출
- * e나라도움시스템 매뉴얼 참고
- * 기금사업통장등록, 사업계획서 파일첨부

○ e나라도움시스템 교부신청(사업등록 확정 후)

- 체육회에서 사업등록 확정 후 교부신청서 작성·제출
- * e나라도움시스템 매뉴얼 참고
- * 교부신청서 파일 첨부

3. 사업집행 및 정산

■ 집행수단 별 정산서류

카드	무통장 입금	기타	
		수당	
지출결의서			
거래명세서	전자세금계산서	입금확인증 (입금 후 추가)	
견적서		증빙사진	
비교견적서		출석부	
증빙사진		받는사람	통장
거래처 사업자등록증			신분증
-	거래처통장		자격증(해당)
			소득세 원천징수증

※ 시설임차 시 계약서 첨부

○ 카드(보조금 사업통장과 연결된 e나라도움전용카드 사용 /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)

- 은행 및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
-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전용카드 등록
- 카드 사용 후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집행등록
- 증빙선택: 보조금전용카드
- 집행이체 시 사업통장으로 이체

○ 전자세금계산서

- 법인간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
 - ※ 수기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없이 계좌이체 할 경우 불인정
- 증빙선택: 전자세금계산서
- 집행이체 시 거래처로 이체

○ 기 타

- 수당 집행 시 사용

- 증빙선택: 기타
 - 원천징수 필요 시 보조금계좌로 이체하여 원천징수
 - 보조금계좌에서 수당 지출 후 입금확인증 및 원천징수증 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
 - 원천징수가 필요 없을 시 받는사람 계좌를 입력하여 이체
- ※ 2025년 기타소득 125,000원 이상 세율 8.8% 세금징수

○ 보조금 정산보고서

-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 작성
- 제출서류: 공문, 결과보고서,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보고서
-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정산 작업(매뉴얼 참고)